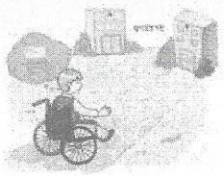
1202410042873270004012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문

h-well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필수서류 수령


장기요양기관 찾기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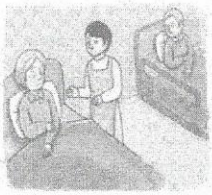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1회당 12시간 이상**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간 20회**(10일, '24.1월부터)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비율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4.1.1.기준)

본인부담 비율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복지용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월 한도액 한 달(매월 1일~말일)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2,069,900	310,480	186,290	124,190	면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0	112,17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0	87,34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0	80,50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0	69,09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0	57,930	38,620	

재가급여비용 ('24.1.1.기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30분 이상	16,630	2,490	1,490	990
60분 이상	24,120	3,610	2,170	1,440
90분 이상	32,510	4,870	2,920	1,950
120분 이상	41,380	6,200	3,720	2,480
150분 이상	48,250	7,230	4,340	2,890
180분 이상	54,320	8,140	4,880	3,250
210분 이상	60,530	9,070	5,440	3,630
240분 이상	66,770	10,010	6,000	4,000

방문목욕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4,670	12,700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0	6,870	4,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7,150	4,290	2,860